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250162	홈페이지 http://www.eraefnb.com/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5.02.0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4.24	담당자 이메일 djun015@erae.com

쌤스커피 정 보 공 개 서

쌤스커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이레에프앤비코리아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쌤스커피 가맹사업본부 소재지 및 연락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47길, 29 B01호		
대표(담당부서)전화	02-511-5997	팩스번호	-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이레에프 앤비코리아	쌤스커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47길, 29 B01호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7.06.26	2017.07.06	정지복, 정문식	02-511-5997	031-448-7824
	법인등록번호	134111-0471396	사업자등록번호	723-87-0057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임원	정지복	쌤스커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47길, 29 B01호		
	정문식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미성		정지복, 정문식	02-511-5997	031-448-7824

3.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쌤스커피	
상 호	쌤스커피 OO점	당사는 보통 해당지역명을 사용하여 가맹점상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쌤스커피	상표권 없음
광 고	-	
그 밖의 영업표지		

4.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	1,793,449	981,558	811,890	4,888,685	135,582	92,475
2023	1,915,360	1,007,188	908,172	4,982,011	174,461	141,281
2024	3,167,881	2,303,295	864,586	5,286,897	113,370	56,414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가맹사업 준비중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정지복	대표이사	2017.06~현재	(주)이레에프앤비 코리아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정문식	대표이사	2017.06~현재	(주)이레에프앤비 코리아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정미성	사내이사	2017.06~현재	(주)이레에프앤비 코리아 사내이사	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3	0	1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만료일
해당없음					

※ 당사의 영업표지는 특허청에 출원되지 않은 관계로 관련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가맹사업 준비중

(직영점 시작한 날: 2023년 05월 31일)

2. [쌤스커피]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이레에프 앤비코리아	쌤스커피	정지복 정문식	가맹사업 준비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47길, 29 B01호

3. [쌤스커피] 업종

영업표지	업종	
쌤스커피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커피	커피, 차 및 디저트 등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쌤스커피]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1	-	1	1	-	1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1	-	1	1	-	1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쌤스커피]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	-	-	-	-	-
2023	-	-	-	-	-	-
2024	-	-	-	-	-	-

※ 가맹사업 준비 중

6. [쌤스커피]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현재 해당 브랜드 외에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쌤스커피]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2당	상한	면적 3.3m2 당	하한	면적 3.3m2 당	
전체	0	해당없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가맹사업 준비 중

8. [쌤스커피]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의 바로 전 사업년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년	해당없음	

※ 가맹사업 준비 중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바로 전 사업연도에 [쌤스커피]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9]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연중	10,000	10,000		
광고	소계	연중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판촉	소계					
	(비공개)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KB국민은행	가맹금예치 부서	-	1599-9999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대신 [국민은행]의 예치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샘스커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4,950]				
가맹비	3,300	계약체결과 동시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1. 영업개시 이전까지 개업지원, 자료제공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상당한 대가는 제외하고 반환 2. 영업개시 이후 반환되지 않음(소멸)	
교육비	1,650	계약체결과 동시	교육 전까지 계약해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점행사비	-	계약체결과 동시	영업개시 이전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1,000]			
계약이행보증금	1,000	계약체결과 동시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 당사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 발생시	1.계약종료 시 잔존채무액을 공제한 후 상호,서비스표등 당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표지의 철거가 완료된 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2.별도의 이자가 없음
담보목적물	해당없음			

※ 위 계약이행보증금의 경우 당사가 인정하는 기관의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보증금은 부가세 없음)
합계	[5,950]
가맹비	3,300
교육비	1,650
계약이행보증금	1,000
개점행사비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1. 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면적 3.3㎡당 금액	반환조건	비고
총계		[56,650]		[8,093]		23.1㎡(7평)기준
간판	별첨2 참조	3,300	착공시 70% 준공시 30%	2,750	공사 전 계약취소	1면 기준 매장별 상이
인테리어 (의탁자 포함)		19,250				23.1㎡(7평)기준
냉난방기		2,200	설치시 100%		설치 전 계약취소	1대 기준
커피 자판기 (기본)	가맹본부	30,800	착공시 70% 준공시 30%		설치 전 계약취소	점주 요청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
초도물류비용	가맹본부	1,100	계약시 100%		상품 미공급시	원부재료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추정한 것으로서 점포의 크기 등의 차이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위 표와 같이 귀하의 점포예정지가 당사에서 정한 기준평형(23.1㎡)에 미달할 경우에는 33㎡당 창업비용이 높아질 수 있고 초과할 경우에는 33㎡당 창업비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도면, 디자인제공 및 감독 실시 대가로 평당 **일금사십사만원(₩440,000)정<VAT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7평 이하는 7평으로 간주)
-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간판 공사를 진행할 경우 간판 공사 관련, 당사의 도면, 디자인제공 및 감독 실시 대가로 **일금팔십팔만원(₩880,000)정<VAT포함>**을 간판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점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통행인의 수, 교통량, 시장 특성, 통행인의 구매 습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별 특성 등 귀하의 점포선정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 ※ 점포선정에 따른 최종 결정은 가맹희망자가 하며 선정 후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미성년자가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해당 없음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금의 분할납부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 기준은[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8.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광고 시 분담액 결정	자세한 내용은 V-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집행 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로열티 (상표사용료)	가맹본부	없음	오픈 후 1개월이내	반환안 됨	해당월 도래 후	1개월분(VAT별도)
추가 교육비	가맹본부	협의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실시 후에는 반환되지않음	교육필요 시 실비범위 내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별첨2 참조	협의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별첨2 참조	가맹본부 분담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교체.보수 후 2일 이전		[IV.가맹점 사업 자의 부담] 중 참조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 개선비용	별첨2 참조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		연20%				
회계처리비용		해당없음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구분(기준: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 및 영업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 및 시공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제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1년 1회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3. 계약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의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출원신청 후 등록된 경우에 한함)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 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샘스커피]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귀하는 2개월 전에 당사에 동의를 구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당사에 동의를 받은 영업양수인은 귀하의 잔여계약기간에 대해 모든 영업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영업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에 교육비로 일금일백육십오만원(₩1,650,000)정<VAT포함>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즉시 가맹사업의 운영에 사용된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지하고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위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이 계약이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위에 규정된 영업표지의 철거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1일당 일금이십이만원(₩220,000)정<VAT포함>을 그 지연 손해배상금으로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쌤스커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별첨 2 참조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상위50% 품목)

순번	품목	공급가격(원)		구분
		상한	하한	
1	해당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쌤스커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없음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쌤스커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의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지불	경제적이익 의 내용	금액(연간 거래총액)	비고
해당없음					

2) 당사가 [쌤스커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지불	경제적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쌤스커피에서 취급하는 커피, 차 등의 상품	왼쪽에 기재된 메뉴 외에 다른 상품을 판매할 경우 당사와 협의	1차 위반 : 구두경고 2차 위반 : 서면 시정 요구 3차 위반 : 물류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지역 특성 및 상권에 따라 위 표에 기재된 상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고객)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당사나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공급하는 각종 원·부재료 일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등을 고객 판매용도 외에 다른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1차 위반 : 구두경고 2차 위반 : 서면 시정 요구 3차 위반 : 물류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쌤스커피와 유사하거나 같은 커피, 차 등의 상품을 전문으로 하는 무인카페 업종	쌤스커피	-

다만, 해당 지역내에 신도시가 건설되거나 백화점, 지하철 역사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의 특수상권의 경우는 별도 상권으로서 출점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100m 원칙 (특수상권은 별도의 영업지역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의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가맹점			
대리점			
일반소매점			
기타			

6)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0%	10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샘스커피]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5조 제2항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 제2항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5조 제2항
4.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5조 제2항
5.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5조 제2항
6.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5조 제2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2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2회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그 시정을 최고한 경우 (아래 참조)	제32조 제1항
2.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한 즉시해지 사유 발생시 (아래 참조)	제32조 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당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에게 물품공급의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2.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당사의 운영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점포를 운영하여 당사가 3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귀하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귀하가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의 물품 및 자재를 사용해서 영업하여, 당사가 3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귀하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점포의 신용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물품대금이 3개월간 3회 이상 연체 및 체납하여 당사가 3

- 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귀하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 5. 귀하가 임의로 당사와의 동종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6. 귀하가 신의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다만, 위 표에 기재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즉시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 32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가맹계약의 즉시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 된 경우
- 2.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6. 귀하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9.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 들어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환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1.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2.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부동산 및 권리문제에 문제가 없을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비 부담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사에게 교육비와 계약이행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통보	
대리행사	발생시 협의			
업무위탁	발생시 협의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 중 [쌤스커피]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쌤스커피에서 취급하는 상품과 유사하거나 같은 상품을 전문으로 하는 무인카페 업종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 중 경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쌤스커피]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자율제(24시간 운영가능)	자율제(연중무휴 가능)	무인운영

※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연속하여 3일이상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영업시간을 월 5회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물류공급의 중단사유에 해당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 및 시공현장의 영업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메뉴 관리 및 상태(20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메뉴 관리 및 상태확인→관리표 작성→완료	필요시	관리팀	
외관청결상태 (외부매장전체)	담당자 매장 방문→외관청결상태 확인→관리표 작성→완료	필요시	관리팀	
내부청결상태 (내부매장전체)	담당자 매장 방문→내부청결상태 확인→관리표 작성→완료	필요시	관리팀	
기타 매뉴얼 준수 상태	담당자 매장 방문→매뉴얼 준수 확인→관리표 작성→완료	필요시	관리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별 균분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별 균분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행사	할인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증정행사				
	팸플렛 등 제작				
	기타 개별행사				
할인카드, 전자상품권 등	상품권	수수료의 50%	수수료의 50%	판매된 상품권(전부 또는 일부)이 매장에 회수 → 매월 회수된 상품권에 대한 수수료 정산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 동의시 전체 가맹점 시행)	서비스 종료시까지
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서비스	서비스에 따라 유동적		멤버십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매장에 한함 (단,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 동의시 전체 적용할 수 있음)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 해당 계약 규정에 따라 분담 (매월 후정산)	서비스 종료시까지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가 자기의 비용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에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



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상품대금의 연체, 계약종료 후의 의무 및 조치위반, 영업비밀준수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손해액을 “갑”에게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당사에 일금오천만(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귀하가 누설 및 유출할 경우 위약별로 일금오천만(50,000,000)원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구입강제품목)을 자점매입할 경우 위약별로 일금오백만(5,000,000)원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 담당자 배정,희망지역 확인	D-47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중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사업설명 및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점포입지 및 경쟁업체 조사 - 입지 주위 점포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협의	- 희망지역 점포 개설승인	D-34~31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 체결 - 인테리어 사항(추가공사등)확정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D-30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공사 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실시	- 현장실습 및 경영교육 - 인허가 사항 점검 (영업허가,사업자등록증) - 식품위생교육 수강	D-8~3(5일)	
개점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지속적 관리지도 및 이벤트 행사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 귀하는 당사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앞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또는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단,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본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귀하와 당사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또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고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현재는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해당없음			
판촉장려금		해당없음			
판촉지원		해당없음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해당없음			
반품지원		해당없음			
마일리지		해당없음			
CRM		해당없음			
테스터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고 개점전 교육 또는 개점후 중간에 대하여는 p35의 내용과 다르지 않으므로 p3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경영지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 방문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항 파악 ▶개선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 ▶시정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경영지도	가맹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에서 방문일자, 소요비용 등에 대해 안내 ▶ 가맹점 방문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샘스커피]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귀하의 안정적인 점포운동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 조건	지원 기간	지원 내용	비 고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또는 경영컨설팅을 희망하는 가맹점 경영지원	매출이 3개월 연속 하락한 경우	가맹계약기간	정부지원 경영컨설팅 안내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샘스커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업시 교육	개점, 메뉴얼교육	교육장	개업 전일까지	필수교육
보수 교육	개업시 교육 숙련도가 낮을 경우	현장실습	추후공지	점주매장
특별 교육	필요 시	현장실습	추후공지	점주매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샘스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개업시 교육	1일	1,650(부가세포함)	미숙할 시 추가교육
보수 교육	추후 공지	협의	
특별 교육	추후 공지	협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는 개업 시 교육, 훈련에 불참할 경우 가맹점을 개업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개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샘스커피 군포부곡점	경기도 군포시 삼성로 20번길 3-9, 102호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연, 월)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약 1년 6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천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44) 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www.eraefnb.com>]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024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2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도면, 디자인제공 및 감독 실시 대가로 평당 일금사십사만원(₩440,000)정<VAT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7평 이하는 7평으로 간주)
-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간판 공사를 진행할 경우 간판 공사 관련, 당사의 도면, 디자인제공 및 감독 실시 대가로 일금팔십팔만원(₩880,000)정<VAT포함>을 간판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을 변경 및 추가할 수 있습니다.